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239
----------	------

2020년 2월 2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월 2일, 김기대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1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0년 2월 2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대 의원)

가. 제안이유

지진재해에 대한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 사업 추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2) 지진방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3)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 요

- 본 제정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 지진방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 지진방재 관련 추진현황

- 시는 ‘16.6월 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중, ‘16.9월 경주, ‘17.11월 포항의 지진발생으로 서울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하고, ‘18.4월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¹⁾을 보완함.
- 보완된 지진방재 종합계획에서는 ①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가속화, ②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③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체계 마련 이상 3개의 대과제를 정하여 각종 세

1) <2016년-2020년>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보완) (상황대응과-4841, ‘18.4.2.)

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표] 참조).

[표] 2016-2020년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세부과제 현황

과제 1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가속화	추진부서
① 공공시설물 : 내진평가 시행 후 단계적 보강	
1-1 공공건축물	
① 서울시 직접소관 공공건축물	상 황 대 응 과 소 관 부 서
② 자치구 소관 공공건축물(내진성능평가 사업비 지원)	상 황 대 응 과 자 치 행 정 과
1-2 도시철도	교 통 정 책 과 서 울 교 통 공 사
1-3 도로시설	도 로 시 설 과 교 량 안 전 과 서 울 시 설 공 단
1-4 하수처리시설	물 재 생 시 설 과
② 학교시설 :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지원	교 육 정 책 과
③ 민간부문 : 내진보강 행·재정적 지원, 제도개선	
3-1 건축물 내진보강지원 제도개선 및 신규제도 건의	
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정부지원 건의	건 축 기 획 과
②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지방세 감면지원) 제도 운영	건 축 기 획 과 세 무 과
3-2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운영	
①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보완, 운영(버전 2.0)	건 축 기 획 과
②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건 축 기 획 과 시 설 안 전 과
3-3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생존공간 조성 지원	
① 필로티 등 취약건축물 내진성능 2차 실태조사	건 축 기 획 과
② 지진 대비 생존공간 조성 지원	건 축 기 획 과
과제 2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추진부서
① 지진안전센터(가칭) 설립 추진	안 전 총 괄 과 상 황 대 응 과 서 울 기 술 연 구 원
② 지진선진도시 정책도입 및 지진방재 전문가 교류	상 황 대 응 과 국 제 교 류 담 당 관
③ 옥외 지진대피소 체계적 관리	상 황 대 응 과
④ 지진 대비 교육·훈련 강화	상 황 대 응 과
4-1 지진체험시설 확충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①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내 지진체험시설 확충	소 방 재 난 본 부 (안전지원과)
②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운영	민 방 위 담 당 관

4-2 지진 대비 시민참여형 훈련 확대 실시	
① 시·구민 참여 지진대피 훈련 실시	상 민 총 방 위 대 응 과 관 과
②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상 황 대 응 과
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상 황 대 응 과
⑥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활성화	상 황 대 응 과
과제 3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체계 마련	추진부서
① 시민대피 및 조기 안정화 대책	
1-1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트라우마 아카데미」 운영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1-2 임시주거시설 관리, 운영 강화	
① 실내구호용 칸막이 텐트 추가 확보	복 지 정 책 과
② 우리시 자체 조립형 구호주택 개발	복 지 정 책 과
③ 재해구호물품 및 창고 정비	복 지 정 책 과
④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지진겸용) 관리	복 지 정 책 과
② 주요재난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상 황 대 응 과
③ 지진재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	
3-1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	상 황 대 응 과
3-2 재난상황실 구조물 및 전력, 통신설비 내진보강	상 황 대 응 과
① 재난상황실 구조물(재난안전대책본부) 내진보강	자 치 구
② 재난상황실 내 전력·통신설비 내진보강	자 치 구
3-3 서울시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시스템 연구(2차년도)	상 황 대 응 과
3-4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반/평가단 구성, 운영	상 황 대 응 과 자 치 구

○ 따라서 동 조례안은 기 추진 중인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추진근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종합계획이 담고 있는 각종 지진방재와 관련한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동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1) 목적(안 제1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 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진방재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2)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본 제정안에 사용되는 “지진재해” 및 “지진방재”에 대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인용하고 있음.
- 먼저, “지진재해”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地震動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으며,
- “지진방재”는 지진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3)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4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지진재해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 제9조의2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은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에 근거할 때 자치단체장은 행안부의 지진방재종합

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 시행계획만 제출하면 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보다 효과적인 지진방재를 위해 현재 별도의 5개년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 여기서 행안부와 서울시의 종합계획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고, 서울시의 종합계획은 행안부 종합계획 중 자치단체에 부여된 계획을 모두 포함하면서 서울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추가적인 사항 즉, ‘지진안전센터(가칭) 설립 추진’ 등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표] 행안부와 서울시의 지진방재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 비교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과제 : 행정안전부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 (2019~2023년) 중 자치단체의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과제(8개)	시 지진방재종합계획 추진과제 :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2016~2020년)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지진·지진해일 훈련 추진 - 지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 지진재난 매뉴얼 개선 및 강화 - 지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강화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 강화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가속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물, 2) 학교시설물, 3) 민간건축물 2. 체계적 예방·대비책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진안전센터(가칭) 설립 추진 2) 지진선진도시 정책도입 및 지진방재 전문가 교류 3) 옥외지진대피소 체계적 관리 4) 지진 대비 교육·훈련 강화 5) 자진가속도 계측기 설치확대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6)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표시제 활성화 3. 조기 안정화를 위한 대응·복구 체계 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대피 및 조기 안정화 대책 2) 주요재난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3) 지진재난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

- 결과적으로, 안 제4조는 서울시가 현재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5년 단위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울시만의 종합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안 제4조의 지진방재종합계획 포함사항과 근거 법령

지진방재종합계획 포함사항	관계 법령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화산재해대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영) 제1항제3호, 제6항, 제7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화산재해대법」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화산재해대법」 제10조의3(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지진·화산재해대법」 제11조(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5.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화산재해대법」 제20조(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화산재해대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지진방재사업(안 제5조)

제5조(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기술연구원 서울 지진안전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5조는 시장이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서울 기술연구원 산하 서울지진안전센터에 지진방재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지진방재사업을 수행할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와 관련하여 서울기술연구원은 '19.12월말 이사회를 개최해 지진 안전센터 신설을 확정하였고 '20.2월 현재 지진안전센터 설치 및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다만, 현재는 조직체계상 소요인력을 다 갖추지 못한 초기단계에 불과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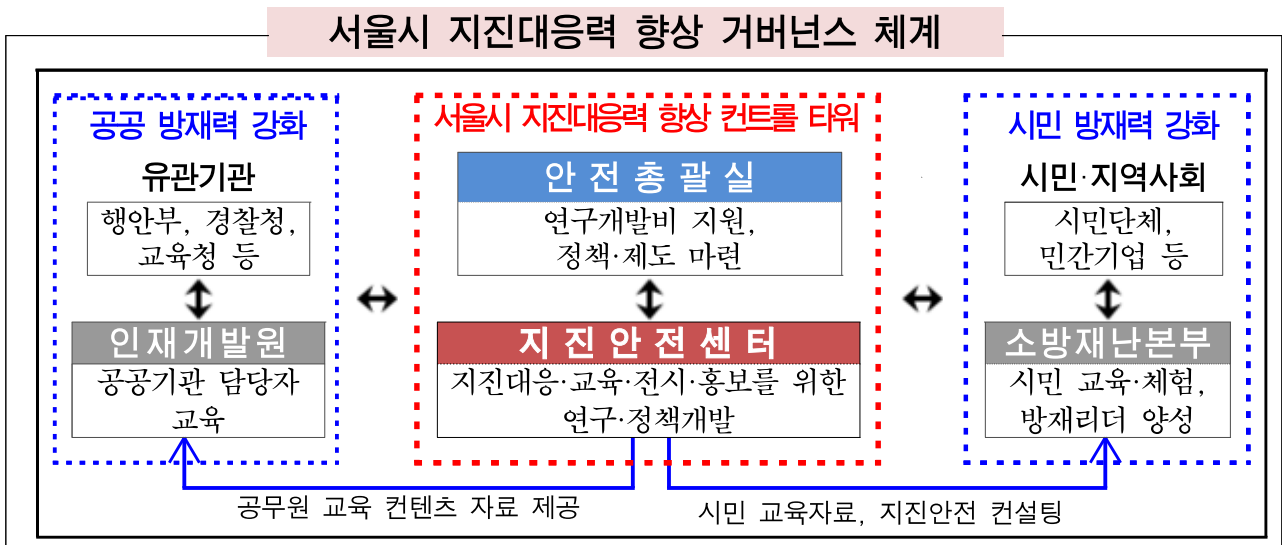
[표]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 조직운영방안(2020, 2021년)

연도	중점분야	사업내용
'20년~	공공 중심의 지진방재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분야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대비 비상도로망 지정, 관리·운영 방안 - 서울시 맞춤형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구축 등 ○ 지진방재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대책본부 훈련 가이드라인 및 시나리오 개발 - 공무원/시민용 지진방재 교육자료 개발 등 ○ 지진방재협의체/자문단 구성(준비단계)
'21년~	산·학·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분야 협력 연구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저비용 내진성능 향상 기술 - 저비용 지진가속도계측기 민간 확대보급 방안 등 ○ 지진방재교육·훈련 콘텐츠 개발(계속) 및 피드백을 통한 개선 - 지진방재교육·훈련자료 개발(※산업체로 확대) - 학교 지진방재교육 실시 및 자료 개선 ○ 지진방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제도화 ○ 지진방재협의체/자문단 운영(활용단계)
--------------	--

- 따라서 안 제5조가 정한 각종 지진방재사업들이 전문연구기관인 지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만일의 지진재해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짐은 물론 성과물에 대한 현장 적용성 및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표] 서울시의 지진방재사업 추진체계(안)



- 다음으로, 각 호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의 범위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교육, 전시, 홍보 등으로 지진방재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 이는 지진방재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이해되며, 지금까지 서울시가 각종 인프라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대시민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범위 설정이라 사료됨.

5) 자문단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방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6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방재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참여한 자문위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동 규정을 통해 서울시는 안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자문단을 활용하거나 서울시가 지진안전센터 등을 통해 시행하는 각종 지진방재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이나 적정성 등을 전문적 시각에서 점검하고 자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음.

■ 기타(비용추계)

- 동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안 제5조(지진방재사업)와 관련한 서울지진안전센터 운영비용이 연간 8억 5천만원이고, 안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와 관련한 지진방재자문단 운영비용이 연간 1천 7백만원으로 추계되어 연간 8억 6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다만, 안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와 관련한 비용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이 기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기인함.

■ 결론

- 그 동안 서울시는 지진방재와 관련하여 각종 인프라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 왔던 반면, 대 시민 교육·훈련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방재사업들은 다소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는 점에서,
- 본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각종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 추진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서울시 지진방재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환경구축이라 하겠음.
- 다만, 지금의 서울기술연구원 지진안전센터가 완전한 조직으로 구비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바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진안전센터 조직의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김기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9
----------	------

발의년월일 : 2020년 1월 2일

발 의 자 :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진수,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의원(12명)

1. 제안이유

지진재해에 대한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 사업 추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지진방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지진관련 사업범위, 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사업)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 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대응·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지진방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단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제5조(지진방재사업) 및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및 지진방재자문단 운영비용 발생
 - 단, 제4조(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는 기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 지진방재자문단 운영비용

나. 전제

- 현재 서울지진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은 사업비와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사업비는 지진방재교육 콘텐츠 개발, 훈련시나리오 개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연간 3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센터는 3팀(지진연구팀, 재난교육팀, 산학협력팀(가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 * 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계획(안)을 참고하였으나, 추후 계획은 변동 가능
 - 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11명 총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 센터장은 서울기술연구원의 안전방재연구실장이 겸직하고, 팀장 및 팀원 일부는 시 공무원 중 방재안전직렬을 파견하는 등 기존인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전제
 - 연구위원급(5급 상당) 2명, 수석연구원급 4명, 전임연구원급 4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기간동안 인건비는 증감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
- 지진방재자문단은 총 13명의 자문위원이 연간 12회(참석 6회/서면 6회)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기간 : 5년(2020~2024)

라. 방법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은 “지진안전센터 설치·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추계
- 지진방재자문단의 위원수 및 자문수당은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의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사업의 ‘서울안전자문단 운영비용’ 적용(2020년 예산안 기준)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4,333,800천원(연평균 866,76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 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안 제5조)	사업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인건비		549,600	549,600	549,600	549,600	549,600	2,748,000
	지진방재자문단 운영비용 (안 제6조)	참석자문 비용		11,700	11,700	11,700	11,700	11,700	58,500
		서면자문 비용		5,460	5,460	5,460	5,460	5,460	27,300
	소계(b)		866,760	866,760	866,760	866,760	866,760	4,333,800	
총 비용(b-a)		866,760	866,760	866,760	866,760	866,760	866,760	4,333,8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 석 관 이수아

☎ 02-2180-7944

e-mail : sua8873@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 지진방재자문단 운영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 4,248,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서울기술연구원서울지진안전센터설치및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

- 연간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비용

=사업비+인건비

=300,000,000원+549,600,000원

=849,600,000원

※ 사업비 : 지진방재교육 콘텐츠 개발, 훈련시나리오 개발 등을 위한 비용

※ 인건비 : 서울기술연구원 직급별 평균임금 적용, 2020년 인건비는 10년간 ('07~'16) 물가상승률 평균 2.3%를 반영하고, 이후 인건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단위: 천원, 명)

구 분	연구(행정)위원	수석연구(행정)원	전임연구(행정)원
평균임금	75,600	57,600	42,000
채용예정인원	2	4	4
연간 인건비	151,200	230,400	168,000

- 지진방재자문단 운영비용 ≒ 85,8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지진방재자문단운영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

- 연간 지진방재자문단 운영비용

=(참석자문수당×참석인원×개최건수)+(서면자문수당×참석인원×개최건수)

=(150,000원×13명×6회)+(70,000원×13명×6회)

=17,160,000원